

사적공원의 조성 (史蹟公園의 造成)

韓 凡 愼

<文化財管理局 行政事務官>

目 次

- | | |
|------------------|---------------------|
| I. 史蹟公園의 概念 | 1. 主體意識 鼓吹를 爲한 史蹟公園 |
| 1. 史蹟의 概念 | 가. 慶州 月城地區 |
| 2. 史蹟과 公園 | 나. 公州 公山城地區 |
| II. 史蹟公園造成現況 | 다. 扶餘 扶蘇山城地區 |
| 1. 80年代以前推進事業 | 2. 教育的 機能의 史蹟公園造成 |
| 2. 80年代以後推進事業 | 가. 城郭類型 |
| III. 史蹟公園造成의 問題點 | 나. 住居址·寺址類型 |
| IV. 史蹟公園의 造成方向 | 다. 古墳類型 |
| V. 參考 | |

I. 사적공원(史蹟公園)의 개념(概念)

1. 사적의 개념(史蹟의 概念)

사적(史蹟)은 역사적(歷史的) 유적(遺蹟)을 말한다. 역사적(歷史的) 유적(遺蹟)하면 고분(古墳)·성곽(城郭)등을 일반적(一般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포괄적(包括的)으로 볼 때 역사적(歷史的)으로 전(傳)하여져 현재(現在)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인위적(人爲的)으로 어떠한 歷史的 사실(事實)을 새로운 시설(施設)로 조영(造營)하여 후대(後代)에 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도 이 범주(範疇)에 넣어 볼 수 있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상(文化財保護法上)의 사적(史蹟)은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명승(名勝) 등과 함께 기념물(記念物)의 하나로 분류(分類)되어 있다. 구체적(具體的)인 사적(史蹟)의 내용(內容)을 열거(列舉)해보면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유사이전(有史以前)의 유적(遺蹟)으로 패총(貝塚)·유물포함층(遺物包含層)·주거지(住居地)·지석(支石)·입석(立石)·고분(古墳)등의 유적(遺蹟)으로서 학술적(學術的) 가치(價値)가 큰 것으로 이러한 유적(遺蹟)은 대개 발굴조사(發掘調査)를 통(通)하여 그 성격(性格)을 구명(究明)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계통(系統)의 유적(遺蹟)은 그 나라, 그 민족(民族)의 기원(起源), 형성(形成)을 밝혀줄 수 있는 중요(重要)한 단서(端緒)가 되고, 고대국가(古代國家)의 성립(成立)에서 흥망(興亡)에 이르는 과정(過程)을 문헌(文獻)에서 결여(缺如)된 부분(部分)은 물론(勿論) 완전(完全)한 문헌기록(文獻記錄)이 있는 것에 대한 확실(確實)한 거증(舉證)의 기능(機能)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제사(祭祀)·신앙(信仰)에 관한 유적(遺蹟)이다. 사지(寺址)·사우지(祠宇址)·제단(祭壇)·사고지(史庫址)·전묘지(典廟址)·향교지(鄉校址)·기타(其他) 제사신앙(祭祀信仰)에 관한 유적(遺蹟)으로서 학술적(學術的) 가치(價値)가 큰 것인데 이러한 유적(遺蹟)은 대개 우리의 정신사적(精神史的) 측면(側面)에서의 유적(遺蹟)이다. 특(特)히 삼국시대(三國時代) 들어와 호국불교(護國佛敎)로서 융성하였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가람의 초석(礎石)들은 전국(全國)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이기에 이 계통(系統)의 유적(遺蹟)은 수적(數的)으로도 많을뿐더러 그곳에서 출토(出土)되는 유물(遺物)들 또한 중요(重要)한 것이 많은 것이다.

셋째 정치(政治)·국방(國防)에 관한 유적(遺蹟)이다. 성곽(城郭)·성지(城址)·책채(柵砦)·방루(防樓)·진보(鎭堡)·수영지(守營址)·관문지(關門址)·봉수대(烽燧臺) 및 유지(遺址)·고전장(古戰場)·도읍지(都邑地)·궁전지(宮殿址)·고도(古都)·고궁(古宮)·기타 정치(其他政治)·국방(國防)에 관한 유적(遺蹟)으로서 學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인데 이 분야(分野)의 유적(遺蹟)은 특(特)히 국가(國家)의 흥망성쇠(興亡盛衰)와 관련(關聯)이 있고, 민족시련(民族試鍊)의 현장(現場)을 대변(代辯)하는 자료(資料)로서 교육적(教育的) 효과(效果)가 대단히 큰 유적(遺蹟)이라 할 것이다. 70년대 국가안보(國家安保)와 관련(關聯)하여 호국의지(護國意志)를 고양(高揚)하기 위(爲)하여 주력(主力)하였던 유적정화(유적(遺蹟)淨化) 사업(事業)의 대부분(大部分)은 다 이 범주(範疇)의 유적(遺蹟)이라 할 것이다.

넷째 산업(産業)·교통(交通)·토목(土木)에 관한 유적(遺蹟)이다.

고도(古道)·교지(橋址)·뚝·제방(堤防)·요지(窯址)·시장지(市場址)·식물재배지(植物栽培址)·석표(夕標)·기타 산업(其他 産業)·교통(交通)·토목(土木)에 관한 유적(遺蹟)으로서 학술상(學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인데 이것은 민족생활사(民族生活史), 경제사(經濟史)에 있어 중요(重要)한 자료(資料)를 제공(提供)하는 것이나 수적(數的)으로 많지 않다.

다섯째 교육(敎育)·사회사업(社會事業)에 관(關)한 유적(遺蹟)이다.

서원(書院)·사숙(私塾)·자선시설(自善施設)·석각(石刻)·기타(其他) 교육(敎育)·학예(學藝)에 관한 유적(遺蹟)으로서 학술상(學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인데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사상사(思想史)의 주류(主流)와 그 영향(影響)을 밝히고, 앞으로 민족정신(民族精神)을 이끌어갈 계도적(啓導的) 성격(性格)의 유적(遺蹟)이라고 하겠다.

여섯째 분묘(墳墓)·비(碑)등이다.

분묘(墳墓)·비(碑)·구택(舊宅)·원지(苑池)·정천(庭川)·수석(水石) 기타(其他) 중요(重要)한 전설지(傳說地)등으로서 학술상(學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인데, 분묘(墳墓)·비(碑)는 역사적(歷史的) 중요 인물(重要 人物)의 행적(行蹟)을 확인(確認)할 수 있는 유적(遺蹟)이고, 원지(苑池)·정천(庭川)등은 조경유적(造景유적(遺蹟))인데 우리나라의 자연(自然)에 인공(人工)을 가(加)하는 전통적(傳統的)인 조원술(造園術)을 밝혀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自然)에 대한 우리나라사람들의 사고(思考) 및 그 애찬(愛讚)의 정신(精神)을 알아볼 수 있는 유적(遺蹟)이다.

이와 같은 여섯가지 유형(類型)을 살펴볼 때 사적(史蹟)은 일정한 구역(區域)속의 땅中心인 유적(遺蹟)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적(人工的)인 조성물(組成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광역(廣域)의 구역(區域)에 지상유구(地上遺構)보다는 지표상하(地表上下)에 밀착(密着)되어 보존(保存)되어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아직 그 모든 것을 확실히(確實)하게 구명

(究明)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아 이들 유적(遺蹟)은 전문학자(專門學者)들이 정밀(精密)한 학술(學術)발굴조사(發掘調査)를 통하여 그 유적(遺蹟)의 성격(性格)·규모(規模)·가치(價値)등을 밝혀 학술적(學術的) 자료(資料)를 제공(提供)하여 그에 대한 완벽(完璧)한 역사적(歷史的) 성격(性格)을 구명(究明)할 필요(必要)가 있는 것이다.

84. 9. 30 현재(現在) 사적(史蹟)으로 지정(指定)된 것은 309件으로 패총(貝塚) 7, 고분(古墳) 35, 성(城) 71, 궁지(宮址) 12, 요지(窯址) 14, 사적지(史蹟址) 75, 사지(寺址) 17, 능묘(陵墓) 55, 기타(其他) 19건(件)이 지정(指定)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國家)에서 그 보존(保存)가치(價値)를 인정(認定)한 것이고, 이외 아직 그 성격(性格)이 밝혀져 있지 않거나 보존가치(保存價値)가 국가적(國家的)으로 중요시(重要視)할 정도(程度)는 못되지만 보존(保存)할 필요가 있는 유적(遺蹟)은 市·도지사(道知事)가 시도기념물(市道記念物)로 지정(指定)하여 보존(保存)하도록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서는 규정(規定)하고 있다. 또한 법(法)에서는 이렇게 보존대상(保存對象)으로 지정(指定)된 유적(遺蹟)을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일정(一定)한 구역(區域)을 보호구역(保護區域)으로 지정(指定)하여 일정(一定)한 행위외(行爲外)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제(規制)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부(一部) 국민(國民)들에 對하여 사유재산(私有財産)의 불이익(不利益)을 주게되어 민원(民願)을 사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는 문화재(文化財)뿐 아니라 국토(國土)의 종합적이용(綜合的利用)·개발(開發)을 목적(目的)으로 합리적(合理的) 규제(規制)를 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도시계획법(都市計画法)을 비롯하여 농지보전(農地保全)에 관(關)한 법률(法律)등 국가목적상(國家目的上) 어쩔 수 없이 개인(個人)의 재산권행사(財産權行使)를 제한(制限)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큰 문제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2. 사적(史蹟)과 공원(公園)

이희승편(李熙昇編) 「국어대사전」을 보면 사적(史蹟)을 「역사상(歷史上)으로 남아 있는 사건(事件)의 자취」 또는 「역사상(歷史上)의 유적(遺蹟)」으로 풀이하고 있고, 공원(公園)은 「공중(公衆)의 보건(保健)·교화(教化)·휴양(休養)·유락(遊樂)등을 위하여 누구든지 자유로이 거닐며 놀 수 있도록 시설한 유원(遊園)」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역사상(歷史上) 유적(遺蹟)과 공중(公衆)의 휴식(休息)을 위(爲)하여 시설(施設)한 유원(遊園)이 연계(連繫)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問題)는 쉽게 결론(結論)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가지 개념(概念), 자체(自體)의 성립(成立)이 근대화(近代化)의 과정(科程)에서 인식(認識)될 정도(程度)로 일천(日淺)한 데다가 앞으로 계속(繼續) 그 보존(保存) 및 설치(設置)의 필요성(必要性)은 증대(增大)되어간다는 점(點)에서 볼 때 대단히 밀접(密接)할 수가 있다는 것은 부인(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원래 사적보존(史蹟保存)이란 개념(概念)은 18세기이후(世紀以後) Europe에서 성립(成立)된 것으로 중세이후(中世以後) 제후(諸侯)들이 거처(居處)하였던 성(城)이 대단위(大單位)의 숲을 가지고 보존(保存)되어 이를 보존(保存)하기 위한 차원(次元)이었다. 그러므로 사적(史蹟) 단독(單獨)으로서의 보존(保存)이라기 보다 사적(史蹟)을 주축(主軸)으로 주변(周邊)의 자연자원(自然資源)을 묶어 광역(廣域)을 보존(保存)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산업화(産業化)가 가속(加速)되고 인구(人口)가 급속도(急速度)로 팽창(膨脹)하여 도시(都市)가 커져 自然資源이 잠식되어가기 시작(始作)하자 사적(史蹟)이 없어도 일정지역(一定地域)을 보존구역(保存區域)으로 묶게된 것이 공원(公園)의 시원(始源)이요, 도시화(都市化)로 인(因)한 여유공간(餘裕空間)내지 위락공간(慰樂空間)

의 필요성증대(必要性增大)로 자연자원(自然資源)만 가지고는 부족(不足)하여 인공적(人工的)인 시설(施設)을 조성(造成)하는 공원(公園)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원(公園)은 크게 자연공원(自然公園)과 인공공원(人工公園)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現行法)에도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과 도시공원법(都市公園法)이 있어 이를 나누어 공원(公園)을 조성(造成), 관리(管理)하고 있다.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에서는 자연공원(自然公園)의 보존(保存)을 원칙(原則)으로 국민(國民)들의 건강(健康)·휴식공간(休息空間)의 확보(確保)를 위한 최소한(最小限)의 편의시설(便宜施設)을 조성(造成)하고 있는데, 국가(國家)에서 지정(指定)하는 국립공원(國立公園), 도(道)에서 지정(指定)하는 도립공원(道立公園), 군(郡)에서 지정(指定)하는 군립공원(郡立公園)이 있다. 국립공원(國立公園)은 최초(最初) 미국(美國)에서 나왔다. 독립(獨立) 200년의 역사(歷史)인 미국(美國)으로서 Europe과 같이 성(城)을 낀 녹지공간(綠地空間)이 있지 않고, 광활한 구역(區域)의 대자연(大自然)만이 있지만, 가속화(加速化)되는 산업화(產業化)와 도시화(都市化)가 자연(自然)을 잠식한다는 사실(事實)에 착안(着眼)하게 되고, 국토(國土)등 자연자원(自然資源)을 당대(當代)에 모두 개발(開發)한다는 데 우려를 느끼고 먼날 후손(後孫)들에게도 개발(開發)할 대상(對象)을 주기로 하고 설정(設定)한 것이 바로 이 국립공원(國立公園)의 개념(概念)이었고, 이러한 발상(發想)은 점차 세계각국(世界各國)으로 번져나가 웬만하나라에서는 거의 모두 국립공원(國立公園)을 설정(設定)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美國)과는 여건(與件)이 다르지만 좁은 국토(國土)에서나마 효율적(效率的)인 국토이용(國土利用)의 차원(次元)에서 자연자원(自然資源)을 보존(保存)해야겠다는 필요성(必要性)은 마찬가지로 요청(要請)되어 1967년 최초(最初)로 지리산을 국립공원(國立公園)으로 지정(指定)한 이래(以來) 1983년 4월 현재(現在) 15개(個)의 국립공원(國立公園)을 지정(指定)하고 있고, 그 보존(保存)을 위(爲)하여 합리적(合理的)인 공원계획(公園計劃)을 수립(樹立), 추진(推進)해나가고 있다. 그 밖에 도단위(道單位)의 도립공원(道立公園)도 현재(現在) 23개(個) 지정되어있고, 군(郡)에서 지정(指定)한 공원(公園)은 19개(個)에 이르고 있다. 자연공원(自然公園)은 이와 같이 자연자원(自然資源)의 절대보존(絶對保存)을 원칙(原則)으로 이용(利用)을 위(爲)한 최소한(最小限)의 편의시설(便宜施設)만을 조성(造成)하여 나가는 것이다. 한편 도시공원(都市公園)은 인구밀집(人口密集), 교통혼잡(交通混雜), 공해발생(公害發生)등의 소위 도시문제(都市問題)에 쩌들어가는 도시민(都市民)에게 녹지공간(綠地空間)의 제공(提供), 휴식공간(休息空間)의 조성(造成)으로 심신(心身)을 달래주는 위락적(慰樂的) 용도(用途)를 위하여 도시지역(都市地域)에 조영(造營)되는 공원(公園)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한정(限定)된 공간(空間)속에 짝 짜여진 생활(生活)을 하는 현대인(現代人)의 정신적(精神的) 건강(健康)을 위해 필수적(必須的) 요건(要件)으로 그 필요성(必要性)은 점차(漸次) 증대(增大)되어 가고 있다. 사실상(事實上) 도시(都市)와 농촌(農村)의 인구(人口) 구성비(構成比)로 본다면 하더라도 도시공원(都市公園)의 중요성(重要性)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도시공원(都市公園)도 도시계획상(都市計劃上) 여러 가지로 분류(分類)된다. 서울대 윤정섭교수(尹定燮教授)는 도시공원(都市公園)을 대공원(大公園)·소공원(小公園)·특수공원(特殊公園)으로 대분류(大分類)하고 대공원(大公園)에는 도시민(都市民) 전반(全般)이 자연풍치(自然風致)에 접(接)하는 자연공원(自然公園), 유희(遊藝)·운동(運動)·관상(觀賞)·교화(教化)를 위한 보통공원(普通公園), 주로 운동시설(運動施設)을 갖춘 운동공원(運動公園)이 있고, 소공원(小公園)에는 근린거주자(近隣居住者)의 노소일반(老少一般)의 위락(慰樂)을 위한 근린공원(近隣公園)과 주로 11-15세이상(歲以上) 아동위락(兒童慰樂)을 위한 소년공원(少年公園)

年公園) 및 주로 학령전(學齡前) 아동(兒童)을 위한 유아공원(幼兒公園)이 있으며, 특수공원(特殊公園)에는 도로(道路) 및 연도일대(沿道一帶)를 잔디, 가로수, 화단등으로 미관(美觀)을 증대(增大)시켜 만든 도로공원(道路公園)과 집단묘역시설(集團墓域施設)에 조영(造營)을 한 묘지공원(墓地公園)이 있고, 궁원(宮園)·사찰(寺刹) 등의 유적지(遺蹟地)를 포함한 문화재공원(文化財公園)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다. 그는 또 이를 기능상(機能上)으로 나누어 정적공원(靜的公園)과 동적공원(動的公園)을 구별하고 있다. 정적공원(靜的公園)은 수동적(受動的)이며 공지(空地)로서 신선(新鮮)한 공기(空氣)와 햇볕을 풍부(豐富)히 공급(供給)하는 것으로 재래공원의 대부분(大部分)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동적공원(動的公園)은 활동적(活動的)이며 운동경기(運動競技)를 행함(行)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운동장(運動場)·유희장(遊藝場)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공원(公園)의 개념(概念)은 공공(公共)을 爲하여 쓰이는 녹지(綠地) 혹은 자유공지(自由空地)로서 위락(慰樂)·휴양(休養)·운동(運動)등을 위하여 적극적(積極的)인 시설(施設)을 가하든가 그대로 보존(保存)하는 지역(地域)을 말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공원개념(公園概念)을 사적(史蹟)과 연관시켜 본다면 사적(史蹟)을 보존(保存)하면서 공공(公共)의 위락(慰樂)·휴양(休養)을 위하는 공간(空間)의 확보(確保)를 사적(史蹟)공원(公園)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적(史蹟)은 원형보존(原形保存)이 대전제(大前提)다. 어떠한 변형(變形)도 없이 그대로 보존(保存)하여야 하고, 공원(公園)은 공간(空間)을 확보(確保)하여 녹지(綠地)로 보존하든지 적극적(積極的)인 시설(施設)을 대중(大衆)을 위하여 조영(造營)하는 것이므로 이 둘을 합치면 사적(史蹟)을 그대로 보존(保存)하면서 공공(公共)의 휴양(休養)을 위(爲)한 공간(空間)을 확장(擴張)하는 것이 사적공원(史蹟公園)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적공원(史蹟公園)은 주로 자연공원(自然公園)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도시공원중(都市公園中)에서도 도시민(都市民)이 자연풍치(自然風致)에 접(接)하는 공원(公園)이 이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II. 사적공원조성현황(史蹟公園造成現況)

1. 80년대이전추진사업(80年代以前推進事業)

사적공원(史蹟公園)이라는 명칭(名稱)을 내걸고 추진(推進)한 사업(事業)은 80년대(年代以後)부터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言及)한 바와 같이 사적(史蹟)과 공공(公共)을 爲한 공간(空間)이 확보(確保)되는 개념(概念)의 사업(事業)은 80년대이전(年代以前)부터 시작(始作)되었다. 사실상(事實上) 문화재(文化財)를 보수(補修)·정화(淨化)하는 사업(事業)은 적어도 60년대이전(年代以前)에 있어서는 그 대상(對象)이나 규모(規模)나 내용(內容)에 있어서 극히 제한(制限)되고 부분적(部分的)인데 그쳤고, 60年代 후반(後半) 충무공사적지(忠武公史蹟址)로 현충사(顯忠祠)를 대대적으로 정화(淨化)하는데에서부터 문화재사업(文化財事業)은 대폭확충(擴充)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時期)에는 우선 국란극복(國亂克服)의 역사적(歷史的) 유적(유적(遺蹟))과 그 위인(偉人)들에 對한 현창사업(顯彰事業)으로 주로 국민정신교육적(國民精神教育的) 기능(機能)에 우선(優先)을 두고 事業을 추진(推進)하였던 것이다.

구체적(具體的)인 사업내용(事業內容)을 보면, 국란극복(國亂克服)의 현장(現場)이나 위인(偉人)을 모신 사당(祠堂)의 소재지(所在地) 등에 당시(當時)의 상황(狀況)을 알려줄 수 있는 기록화(記錄畵)나 유물(遺物)을 전시(展示)하는 시설(施設)의 설치(設置)와 위인(偉人)들의 묘역(墓域) 또는 사당(祠堂)에 참배(參拜)하도록 정화(淨化)하는 것이 주축(主軸)을 이뤘다.

이것은 이러한 유적(遺蹟)의 조성목적(造成目的)이 국민(國民)의 정신교육(精神教育)이란 기능(機能)을 발휘하도록 하는 기조(基調)에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면 公園의 기능상(機能上) 위락적(慰樂的) 기능(機能)은 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때에 조성(造成)된 事業은 경주(慶州) 통일전(統一殿), 서울 낙성대(落星臺), 강화전적지(江華戰蹟地), 제주(濟州) 항몽유적(抗蒙遺蹟), 통영(統營) 제승당려수(制勝堂麗水) 충민사(忠愍祠), 충무(忠武) 세병관(洗兵館), 금산(錦山) 칠백의총(七百義塚), 광주(光州) 충장사(忠壯祠), 부산(釜山) 충렬사(忠烈祠), 의령(宜寧) 충익사(忠翼祠), 해남(海南) 표충사(表忠祠), 충주(忠州) 충렬사(忠烈祠), 서울 행주산성(幸州山城), 광주(廣州) 남한산성(南漢山城), 수원성곽(水原城郭), 홍주성(洪州城), 해미읍성(海美邑城), 서울성곽(城郭), 광산(光山) 포충사(褒忠祠), 상주(尙州) 정기룡장군유적(鄭起龍將軍遺蹟), 남원(南原) 만인의총(萬人義塚), 진주성(晉州城) 등이 있다.

그런데 조성후(造成後) 수년(數年)이 경과(經過)한 지금 이들 유적(遺蹟)은 호국위인(護國偉人)들의 참배기능(參拜機能)만 있는 것은 아니고 훌륭한 도시공원(都市公園)의 기능(機能)도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경역(境域)의 풍치보존(風致保存)으로 인한 관광자원(觀光資源)으로서의 역할도 무시(無視)할 수 없는 현실(現實)에 이르고 있다.

2. 80年代以後 추진사업(80年代以後 推進事業)

문화재보존관리(文化財保存管理)는 80年代에 들어서면서 그 以前에 활발하였던 국난극복(國難克服)의 역사유적정화사업(歷史遺蹟遺蹟淨化事業)이 어느 정도 일단락(一段落)되었다고 보고, 이제 현존(現存)한 문화재(文化財)의 원형보존(原形保存)에 주력(主力)하여야겠다는 정책전환(政策轉換)이 있게 되었다. 여기에 발맞추어 종전(從前)의 낡은 것은 버리고 새것만을 우선하던 개발제일주의(開發第一主義)의 속성(屬性)에 의해 무분별(無分別)하게 밀려나던 전통유적(傳統遺蹟)에 對한 보존(保存)의 필요성(必要性)이 재인식(再認識)되어 전통초가(傳統草家)를 비롯한 반닫이, 뒤주, 맷돌 등의 민속자료(民俗資料)와 탈춤 등 민속(民俗)놀이 등의 중요성(重要性)이 제고(提高)되고, 무조건적(無條件的)인 개발(開發)의 맹점(盲點)이 노출(露出)되기 시작(始作)하였다.

사실(事實) 새마을 운동(運動)으로 농촌(農村)에는 스투트·양기와 일색의 마을로 모습을 바꾸어 전래(傳來)의 초가(草家)는 씨를 말리고, 성황당이나 석장승같은 것은 미신(迷信)으로 뽑히어 나가거나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 또한 고색창연(古色蒼然)한 고건물(古建物)이 들어찬 사찰내(寺刹內)에도 현대식 시설(現代式 施設)의 범람으로 역사적 향기(歷史的 香氣)가 그대로 사라져버린 곳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특히 관광지(觀光地)로 이름이 조금 남아 있는 곳은 관광개발(觀光開發)이라는 이름으로 호텔·여관등 숙박시설(宿泊施設)과 식당(食堂)·기념품판매점(記念品販賣店)등의 상가조성(商街造成)으로 그윽한 고적(古蹟)의 면모가 상당히 훼손된 것이 사실(事實)이었다. 그리고 도시(都市)에서는 도시개발(都市開發)의 차원(次元)에서 웬만한 유적지(유적(遺蹟)地)는 국한(局限)된 구역(區域)만을 남긴 채 그 주변(周邊)은 고층건물(高層建物)과 도로(道路)의 개설(開設)등으로 뒷전에 물러앉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80年代以前 국난극복(國難克服)의 유적조영(유적(遺蹟)造營)이 새롭게 단장하여 정화(淨化)하였던 데에서도 원인이 있었다. 이 때문에 80年代에 들어서서 문화재(文化財)는 원형보존(原形保存)을 대명제(大命題)로 두고, 그것도 단위문화재보존중심(單位文化財保存中心)인 「點」 단위차원(單位次元)에서 주변경역(周邊境域)도 광역(廣域)으로 묶어 보존(保存)하는 「面」 단위보존차원(單位保存次元)으로 넓혀나가도록 방향(方向)을 전환(轉

換)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80년대이전(年代以前)과 以後를 대별(對別)해보면, 먼저 원형보존(原型保存)을 들 수 있다. 물론 80년대이전(年代以前)에 원형보존(原型保存)을 무시(無視)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當時)에는 국민교육기능(國民教育機能)이라는 입장(立場)에서 새로운 유적(遺蹟)의 조성(造成)이라 볼 수 있는 경역정화(境域淨化)로 역사현장(歷史現場)에 기념비건립(記念碑建立), 묘역정비(墓域整備), 사당건립(祠堂建立), 기념관신축(記念館新築)등 대규모(大規模) 역사(役事)를 동원(動員)하여 역사적(歷史的) 사실(史實)의 투영(投影)을 통(通)한 교육도장조성사업(教育道場造成事業)이라고 할 수 있다면, 80년대이후(年代以後)에는 현존(現存)한 문화재(文化財)의 원형보존(原形保存)을 원칙(原則)으로 주변경역(周邊境域)을 정비(整備)하여 역사적(歷史的) 유적(遺蹟)을 그 품격(品格)에 맞게 보존전승(保存傳承)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事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80년대(年代) 들어서는 새로운 시설(施設)의 조성(造成)이나 대단위(大單位) 현창시설(顯彰施設)은 지양(止揚)하고 훼손(毀損)·인멸(湮滅)될 우려가 있는 문화재(文化財)의 보수(補修)에 주력(主力)하는 한편 오손(汚損)된 주변환경(周邊環境)이나 현대건축문화(現代建築文化)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세멘트·콘크리트로 얼룩진 문화재(文化財)의 원모습 찾는 일에 역점(力點)을 두게 되었다.

두 번째로 대별(對別)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歷史的) 환경(環境)의 광역보존(廣域保存)을 들 수 있다. 80年代以前은 사실(事實) 당해문화재(當該文化財)의 보존(保存)에만 눈을 두었고 주변환경(周邊環境)은 경시(輕視)되기도 했으나, 역사적(歷史的) 유적(유적(遺蹟))은 주변경관(周邊景觀)과도 일체감(一體感)으로 연결(連結)되어 보존(保存)되어야 하고, 특히 도시화(都市化)에 따른 공공(公共)을 위한 공간확보(空間確保)라는 공원개념(公園概念)이 강하게 대두(擡頭)됨에 따라 점단위보존(點單位保存)에서 면단위보존(面單位保存)이라는 개념(概念)의 성립(成立)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科程)에서 80年代以後에는 유적지(유적(遺蹟)地)의 원형보존(原形保存)과 광역보존(廣域保存)의 양대원칙(兩大原則)을 기본방향(基本方向)으로하여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을 추진(推進)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사적공원(史蹟公園)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使用)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현재(現在) 대표적(代表的)으로 추진(推進)하고 있는 사적공원조성사업(史蹟公園造成事業)을 들어보면 경주(慶州)의 월성지구(月城地區), 공주(公州)의 공산성지구(公山城地區), 부여(扶餘)의 부소산성지구(扶蘇山城地區)를 들 수 있다. 이들 사업(事業)은 모두 성(城)의 원형보존(原形保存)을 위한 보수정비(補修整備)와 역사적(歷史的) 유적(유적(遺蹟))의 품취(品趣)를 느낄 수 있는 내부공간(內部空間)의 산책로 조성(造成)등에 국한(局限)하고, 성내(城內) 인멸(湮滅)된 건물(建物)의 복원(復元)이나 어떤 시설물(施設物)을 설치(設置)하는 계획(計劃)은 없다. 즉 관람객(觀覽客)들이 이 유적(유적(遺蹟))을 관람(觀覽)하면서 역사(歷史)를 스스로 느끼고 회상(回想)할 수 있는 공간(空間)의 제공(提供)으로 만족(滿足)한다는데 그 조성목적(造成目的)을 두고 있는 것이다.

경주(慶州) 반월성(半月城)에 서서 천년왕조(千年王朝)의 고도(古都)로서 불교문화(佛敎文化)의 극치(極致)를 이룬 서라벌의 체취를 맡고 느끼는데, 고증(考證)을 할 수 없는 건물(建物)을 짓고 어떤 시설물(施設物)을 할 필요(必要)는 없을 것이며, 고구려(高句麗)와 신라(新羅)의 강압(強壓)에 南으로 밀려와 고토회복(故土回復)의 염원(念願)을 쌓았던 부소산성(扶蘇山城)에 가서 옛날 백제(百濟)의 혼(魂)을 찾아보는데 없어져버린 유적(유적(遺蹟))을 다시 복원(復元)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意味)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유적(遺蹟)을 이렇게 정비(整備)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史蹟)으로서의 역할(役割)과 공원(公園)으로서의 역할(役割)을 연결(連結)할 수 있는 한 방편(方便)으로서 이들, 유적(遺蹟)은 그렇게 정비(整備)하고 있지만, 일반인(一般人)들을 爲하여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의 이해(理解)를 돕기위한 교육시설(教育施設)이 필요한 곳은 나름대로 시설(施設)의 조성(造成)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다. 경주(慶州) 안압지(雁鴨池)의 경우 이미 없어진 건물(建物)들에 대한 추정(推定) 모형(模型)을 축소(縮小) 제작(製作)하여 전시(展示)하고 있으며, 암사동(岩寺洞)의 선사주거지(先史住居址)는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의 생활(生活)모습을 실감(實感)할 수 있도록 움집을 제작(製作)하고 석기(石器)를 전시(展示)하고자 하는 내용(內容)의 사업(事業)을 추진(推進)하고 있으며, 공주(公州) 송산리고분(宋山里古墳)의 경우 발굴상태(發掘狀態)의 고분내부(古墳內部)모습을 모조품(模造品)으로 제작(製作)하여 전시(展示)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는 모두 단순(單純)한 유적(遺蹟)의 상태(常態)로는 역사적(歷史的) 사실(史實)의 이해(理解)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보조적(補助的)인 수단(手段)을 채택(採擇)한 것이다.

여하간에 80年代以後의 사적보존사업(史蹟保存事業)은 새로운 조영(造營)이나 복원(復元)은 일단락(一段落)되고, 현존(現存)한 유적지(遺蹟地)의 원형보존(原形保存)과 그에 따른 광역(廣域)의 주변보존(周邊保存) 또는 어떤 교육적(教育的) 기능(機能)을 가진 최소한(最小限)의 부대시설조성(附帶施設造成)이 그 골격(骨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Ⅲ. 사적공원조성(史蹟公園造成)의 문제점(問題點)

사적공원조성(史蹟公園造成)의 기본원칙(基本原則)이 원형보존(原形保存)과 광역보존(廣域保存)이라고 할 때 부딪치는 가장 큰 문제(問題)는 개발(開發)과 관련(關聯)되는 것이다. 특히 협소한 국토(國土)에 빈약(貧弱)한 자원(資源)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도 당면과제(當面課題)는 국토(國土)의 효율적(效率的) 이용(利用)과 자원(資源)의 합리적(合理的) 투자(投資)로 국가발전(國家發展)과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추구(追求)해야만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개발(開發)은 우선적(優先的)이고 그 시급성(時急性)은 재론(再論)의 여지(餘地)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60년대(年代)이후 오늘까지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개발(開發)에 역점(力點)을 두고 경제개발(經濟開發), 사회개발(社會開發)을 해왔고 이에 맞춘 지역개발(地域開發)이 도처(到處)에서 불길처럼 타올랐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過程)이 시작(始作)된지 2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무조건적(無條件的)인 개발(開發)에 수반된 문제점(問題點)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른 대응처방(對應處方)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통(傳統)의 보존문제(保存問題)이다. 물론 개발(開發)을 추구(追求)하는데 나타나는 문제(問題)는 그 하나만이 아니고 개발(開發)의 균형(均衡)이라든지, 개발(開發)의 질(質)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問題點)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보존(保存)과의 관련(關聯)에서만 따져보기로 한다.

한 예(例)를 들어 농촌주택(農村住宅)의 경우 조상(祖上) 대대로 살아온 초가(草家)를 모두 없애고 취락구조개선(聚落構造改善)을 실시(實施)한 결과(結果) 우리에게서 전래(傳來)의 주거양태(住居樣態)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狀態)에 이르게 되었다. 새로운 양식(樣式)의 개량주택(改良住宅)이 생활(生活)에 편리(便利)한 점(點)과 미관상(美觀上) 깨끗한 점(點)이 있겠지만, 어느 곳을 가나 천편일률적인 단조(單調)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울 때 시원하며 추울 때 따뜻하도록 생활(生活)의 지혜를 짜서 나름대로 살아온 전래초가(傳來草家)의 편리

(便利)한 점(點)은 무조건 도외시한 탓에 실제 생활(生活)에 얼마나 도움이 있는지는 따져 보지도 않았던 면이 있다. 이러한 까닭에 외국(外國) 사람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모습은 전통(傳統)있는 민족(民族)의 색채는 없었던 것이고, 미개(未開)의 상태(狀態)에서 이제 막 깨어나 겨우 근대적형태(近代의形態)의 주거지(住居地)가 조성(造成)되는 단계(段階)로 보여졌던 점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事實)은 도시(都市)에서도 같다. 500年 도읍지(都邑地)인 서울의 경우 아무리 외국인(外國人)에게 이 도시(都市)가 500年 왕조(王朝)의 도읍지(都邑地)였다고 설명(說明)을 하여도 그 외국인(外國人)은 이해(理解)할 수가 없는 것이다. 김포공항(金浦空港)을 내려 탁 트인 김포가로(金浦街路)를 달릴 때 좌우(左右)의 풍경(風景) 어느 곳에 전통(傳統)의 색채(色彩)가 있는가. 한강(漢江)다리를 건너 도심지(都心地)에 이르면 더 할 것이다. 겨우 덕수궁(德壽宮)·경복궁(景福宮)등의 고궁(古宮)에서 옛 건물(建物)을 대하겠지만 인접(隣接)한 고층(高層)빌딩의 숲과 비교(比較)해 보면 그것은 한낱 정원용(庭園用)으로밖에 인식(認識)을 못하게 된다. 무엇을 가지고 500年 고도(古都)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86, 88올림픽을 앞두고 잠실일대에 국립경기장(國立競技場)을 조성(造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地域)은 우리 역사상(歷史上) 백제(百濟)가 최초(最初)로 도읍(都邑)을 정(定)하고 수백년(數百年)동안 존속(存續)하였던 유적(遺蹟)이 산재(散在)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가지를 연결(連結)시켜 전통(傳統)의 보존(保存)과 국립경기장(國立競技場)을 조화(調和)있게 조성(造成)하여야 한다는 명제(命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現實)은 그렇지 못하다. 도시개발론자(都市開發論者)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러한 유적지(유적(遺蹟)地)는 개발(開發)의 지장물(支障物)로 인식(認識)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優先)은 이것을 무시(無視)한 채 계획(計劃)이 성안(成案)되고, 나중에 이것이 보존(保存)되어야 한다는 여론(輿論)에 위말리면 적당한 자리에 장식용(裝飾用)으로 얹혀 놓으면 그 뿐인 것이다. 이같은 발상(發想)은 60年代以後 새로운 조영(造營)의 개발(開發)에 익숙해진 우리 국민(國民) 모두에게 설득력(說得力)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事實)이었다. 그러므로 보존론자(保存論者)들의 주장(主張)은 이에 양립(兩立)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서울은 나이 열살의 신흥도시(新興都市)로서의 새로운 면모(面貌)만이 돋보이게 될 뿐이었다.

남대문(南大門)과 동대문(東大門)의 경우 국보(國寶) 1號와 보물(寶物) 1號로서 어울린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것도 개발론자(開發論者)들의 도시개발(都市開發)에 따른 고층(高層)빌딩의 건립(建立)에 완전히 눌린 탓이다. 이러한 예(例)는 조선(朝鮮)호텔의 정원(庭園)이 되어버린 환구단(圜丘壇), 교보(敎保)빌딩의 수문격(守門格)인 비각(碑閣)등 서울시내도처(市內到處)에 깔려 있다. 독립문(獨立門)의 경우 고가(高架)다리의 필요성(必要性) 측면(側面)만 높은 가치(價値)를 부여하는 개발론자(開發論者)들에게 있어, 그 멀지도 않은 백년전(百年前) 물밑 듯 밀려오는 열강(列強) 제국주의(帝國主義)의 파도(波濤)에 굽히지 않고 저항(抵抗)한 우리 할아버지의 꾀긋한 기백(氣魄)을 기대(期待)할 수 없는 대표적(代表的) 사례(事例)로서 한쪽 구석에 밀려나 앉아있는 것이다.

현재(現在) 잠실쪽에는 백제초기(百濟初期) 유적(遺蹟)으로 왕궁(王宮)이 놓여있었으리라고 추정(推定)되는 몽촌토성(夢村土城)과 고구려(高句麗)에 대항(對抗)하는 방비벽(防備壁)으로서의 풍납토성(風納土城), 그리고 초기(初期) 왕족(王族)과 귀족(貴族)의 묘(墓)로 추정(推定)되는 석촌동(石村洞), 방이동(芳蔦洞)의 고분(古墳)등 다양(多樣)하고 귀중(貴重)한 유적(遺蹟)이 깔려 있다. 이 중 석촌동삼호분(石村洞三號墳)의 경우 83~84年 발굴조사(發掘調査)를 통하여 밝혀진 면모(面貌)를 보면 지금까지 한반도(韓半島) 최대(最大)의 적석총(積石

塚)으로 알려진 만주(滿州)의 장군총(將軍塚)보다 훨씬 더 거대(巨大)한 규모(規模)를 가진 적석총(積石塚)으로 아마도 당시(當時) 최강시대(最強時代)를 구가했던 근초고왕(近肖古王)의 왕릉(王陵)이 아니냐는 추측(推測)이 나올 정도로 귀(貴)한 유적(遺蹟)으로 확인(確認)되었다. 그러나 그 보존(保存)에 있어서는 이미 도시계획(都市計劃)에 의한 토지구획정리(土地區劃整理)사업(事業)이 완료(完了)되어 인접(隣接)한 지역(地域)의 토지(土地)는 이미 민간인(民間人)에게 환지(換地)가 되어있고 불과 30m떨어진 4호분(號墳)과의 사이에는 35m 간선도로(幹線道路)가 뚫려있는 현실적 문제(問題)가 제기(提起)되었다. 개발론자(開發論者)들은 말하고 있다. 왜 계획성안(計劃成案)이전(以前)에 이것을 알아가지고 개발계획(開發計劃)에 반영(反映)하지 못하고 계획확정후(計劃確定後)에 문제(問題)를 제기(提起)하는가.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一方的) 논리(論理)다. 모든 유적(遺蹟)은 오랜 연륜(年輪)으로 지상(地上)에 남겨진 건축물(建築物) 이외(以外)에는 땅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확실(確實)한 조사(調査)가 완료(完了)되지 않고는 그 면모(面貌)를 확인(確認)한다는 것은 불가능(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헌등(文獻等)의 자료(資料)에 지상(地上)의 남아있는 유적(유적(遺蹟))들을 통(通)하여 어느 정도(程度) 유적(遺蹟)의 면모(面貌)를 추정(推定)할 수 있는 것은 사전(事前)에 그 보존상(保存上) 필요(必要)한 조치(措置)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 알려지지않고 지하(地下)에 매장(埋藏)된 유적(遺蹟)의 경우는 학술발굴조사(學術發掘調査)를 통(通)하여 그 존재(存在)를 확인(確認)하여 보존(保存)을 위(爲)한 조치(措置)를 취(取)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성안시(都市計劃成案時)에 모든 유적(遺蹟)의 존재(存在)를 망라하여 검토(檢討)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반적(一般的)으로 알려지지 않은 유적(遺蹟)이 세상(世上)에 알려지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국한(局限)된다. 하나는 우연히 노출(露出)되어 발견신고(發見申告)되는 경우다. 유명(有名)한 전남신안해저유물(全南新安海底遺物)이나 공주무녕왕릉(公州武寧王陵)의 발견(發見)은 어부(漁夫)의 어로작업중(漁撈作業中)이거나 배수로공사중(排水路工事中) 인부(人夫)에 의하여 노출(露出)되어 학자(學者)들이 현지조사(現地調査)를 거친 후 본격적(本格的) 발굴조사(發掘調査)를 착수(着手)하여 그 가치(價値)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규모(大規模) 건설공사(建設工事)에 앞선 사전(事前) 지표조사(地表調査)를 통(通)하여 발굴(發掘)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잠실 일대(一帶)의 유적(遺蹟)이 잠실 지구(地區)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에 앞서 사전(事前)에 시행(施行)된 지표조사(地表調査) 결과 확인(確認)된 유적(遺蹟)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까닭으로 사업계획수립(事業計劃樹立)에 충분(充分)한 인지(認知)가 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特)히 확실(確實)한 발굴조사(發掘調査)이전단계(發掘調査以前段階)에서는 전문가(專門家)들도 구체적(具體)인 설명(說明)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전문가(非專門家)들에게 있어서는 대수롭지 않은 유적(遺蹟)으로만 비치게 되는 것도 큰 문제점(問題點)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理由)로 개발(開發)과 보존(保存)의 문제(問題)에서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유적(遺蹟)의 대부분(大部分)이 지상유적(地上유적(遺蹟))보다는 지표하(地表下)에 있다는 점(點)이다. 이것이 일천(日淺)한 우리의 문화의식(文化意識)과 더불어 개발(開發)에 있어서 보존(保存)의 중요성(重要性)에 대(對)한 경시(輕視)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당면(當面)한 국가개발(國家開發)이라는 명제(命題) 아래 더 잘 살 수 있는 경제사회개발(經濟社會開發)앞에 문화재(文化財) 보존(保存)은 더욱 존재가치(存在價値)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IV. 사적공원(史蹟公園)의 조성방향(造成方向)

역사적(歷史的) 유적(遺蹟)으로서의 원형보존(原形保存)과 공공휴양(公共休養)을 위(爲)한 여유공간(餘裕空間)을 확보(確保)하는 공원으로서의 기능(機能)을 기초(基調)로 한 사적공원(史蹟公園)의 조성방향(造成方向)은 무엇보다도 사적보존(史蹟保存)에 대한 인식(認識)의 제고(提高)라 할 것이다.

개발(開發)도 중요(重要)하지만 전통(傳統)의 보존(保存) 역시 중요(重要)하다는 인식(認識)은 말로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실제(實際) 맞부닥치면 어려운 문제(問題)인 것은 사실(事實)이다. 뉘라도 쉬운 방법(方法)을 쫓아두고 어려운 길만을 골라가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구(悠久)한 연륜(年輪)으로 그 생명(生命)을 간직한 문화유적(文化유적(遺蹟))의 보존(保存)은 민족정신(民族精神)의 계승(繼承)이며, 그것은 분명 과거(過去)의 문화경관(文化景觀)으로서 인간(人間)이 자연(自然)의 소재(素材)를 사용(使用)하여 자연(自然)이 주는 가능성(可能性)의 범위(範圍)안에서 정치적(政治的)·경제적(經濟的)·사회적(社會的) 욕구(慾求)에 기초(基礎)하여 창조(創造)한 과정(過程)인 것이다. 결국(結局) 사적공원(史蹟公園)이 가지는 기능성(機能性)은 넓어서 어떤 때는 역사(歷史)로 어떤 때는 자연(自然)에 감응(感應)하여 볼 수 있는 공간(空間)의 제공(提供)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저절로 사람들은 일상성(日常性)에서 해방(解放)되어 새로운 문화(文化)를 창조(創造)하는 모티브이션을 파악(把握)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적공원(史蹟公園)의 조성(造成)이야말로 민족(民族)의 전통(傳統)이나 문화(文化)가 배양(培養)되는 정신적(精神的)인 토양(土壤)이며 그 결정적(決定的)인 기반(基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사적공원조성(史蹟公園造成)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을 제시(提示)해 보면 먼저 역사적(歷史的) 유적(유적(遺蹟))에 대한 보존(保存)의 목적의식(目的意識)과 방법의식(方法意識)을 인식(認識)해야 하고 특히 후자(後者)의 경우 일반국민(一般國民)의 생활향상(生活向上)을 위(爲)한 개발(開發)과 향토애호정신(鄉土愛護精神)의 양성(養成)이 조화(調和)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존(保存)의 목적의식(目的意識)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의 입장(入場)에서 우선 개발계획(開發計劃)이 수립(樹立)되는 경우 전국적(全國的) 시야(視野) 밑에서 검토(檢討)되겠지만 특히 역사적(歷史的) 유적지역(遺蹟地域)에서는 그 시대성(時代性)과 지역성(地域性)이 충분(充分)히 검토(檢討)되어 학술적(學術的) 보존(保存)과 공원적(公園的) 공간(空間)의 확보(確保)에 대(對)한 방법(方法)을 결정(決定)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現在) 석촌동(石村洞) 3호분(號墳)의 경우 4호분(號墳)과의 경역화문제(境域化問題), 관통도로(貫通道路)의 우회(迂廻)등을 생각해 본다면 일변(一邊) 40m의 방형(方形) 적석총(積石塚)을 그대로 복원(復元)할 때 여유공간(餘裕空間)을 어느 정도(程度)할 것인가가 검토(檢討)되어야 한다. 이를 위(爲)하여 먼저 고분(古墳)의 확실(確實)한 규모(規模)를 확인(確認)하는 발굴조사(發掘調査)의 실시(實施)와 이에 따른 정비방안(整備方案)은 순차적(順次的)으로 진행(進行)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표상(地表上) 확인(確認)된 구역(區域)의 보존(保存)만을 염두(念頭)에 두었을 뿐 지표하(地表下) 유적(遺蹟)에 대(對)해서는 전혀 고려(考慮)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관통(貫通)된 도로(道路)에 의하여 그 귀중(貴重)한 고분(古墳)의 기반부(基壇部)가 무방비(無防備)로 노출(露出)되어 버려 그 긴급보존(緊急保存)에 법쩍을 떨었던 것이다. 지금 이 지역(地域)의 보존(保存)을 위(爲)하여 관계부서(關係部署)에서 다시 방안(方案)을 연구(研究)하고 있지만 근본적(根本

的)으로는 인식(認識)의 차이(差異)라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도로계획선(道路計劃線)의 인근(隣近)에 고분(古墳)이 있다면 그 계획선(計劃線)의 타당성(妥當性) 검토(檢討)에 있어 역사적(歷史的) 유적(遺蹟)의 보존(保存)을 생각했어야 할 것이다.

보존(保存)의 방법의식(方法意識)

역사적(歷史的) 유적(遺蹟)이 갖는 특수성(特殊性)으로 사실(事實) 이의 보존(保存)을 위(爲)하여 규정(規定)하는 입법(立法)은 대단히 큰 한계(限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역사적(歷史的) 유적(遺蹟)에 대(對)한 개발의욕(開發意慾)을 무조건(無條件) 억제(抑制)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적(歷史的) 유적(遺蹟)의 직접환경(直接環境) 및 주변환경(周邊環境) 또는 부수(附隨)된 여건(與件)에 대(對)한 적절(適切)한 보존방법(保存方法)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必要)하다. 여기서 현행(現行) 건축법(建築法) 第3條를 검토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법(法)의 규정(規定)은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의한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및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適用)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條文)은 역사적(歷史的) 유적(遺蹟)에 대한 건축법(建築法)의 적용(適用)이 제외(除外)되기 때문에 이를 저해(沮害)할 우려가 있는 무모한 건축물(建築物)의 설치(設置)같은 것은 허락하지 못한다는 데에 그 본의(本意)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 도시공원법(都市公園法) 第23條를 보면 이렇다.

「①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은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사적(史蹟)·명승(名勝)·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등으로 지정(指定)된 지역(地域)이나 그 보호구역(保護區域)안에 도시공원(都市公園) 또는 녹지(綠地)에 관한 도시계획(都市計劃)을 결정(決定)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과 협의(協議)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규정(規定)에 의한 협의(協議)를 거쳐 결정(決定)된 도시공원(都市公園) 또는 녹지(綠地)의 설치(設置) 및 관리(管理)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條文)도 歷史的 유적(遺蹟)에 대(對)한 공원조성(公園造成)에 있어서 우선적인 보존(保存)을 염두(念頭)에 두어야 한다는 발상(發想)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歷史的 유적(遺蹟)의 보존(保存)에 아무런 문제(問題)가 없는 것처럼 외관(外觀)은 생각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법규(法規)의 설정(設定)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運營)에 있어 이의 보존(保存)을 본위(本位)로 하고 또 이것의 보호(保護)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임을 강조(強調)하고 싶다.

결론적(結論的)으로 우리나라의 歷史的 유적(遺蹟)은 우리 한국인(韓國人)의 창조성(創造性)을 자극(刺戟)하고 우리 한국문화(韓國文化)를 육성(育成)하기 위하여 필요(必要)한 정신적(精神的) 토양(土壤)이며 재보적(財寶的) 의의(意義)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빛나는 미래(未來)를 위(爲)하여 歷史的 유적(遺蹟)의 보존(保存)에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V. 참 고(參 考)

[80년대주요사적공원추진사업(年代主要史蹟公園推進事業)]

1. 주체의식(主體意識) 고취(鼓吹)를 위(爲)한 사적공원(史蹟公園)

가. 경주 월성지구(慶州 月城地區)

신라천년왕조(新羅千年王朝)의 고도(古都)로서 찬란한 불교문화(佛敎文化)를 꽃피웠던 반월성지역(半月城地域)에 각각(各各) 분리(分離)되어 있는 반월성(半月城), 첨성대(瞻星臺), 계림(鷄林), 내물왕릉(奈勿王陵)을 묶은 16萬 4千坪을 한 권역(圈域)으로 하여 대공원(大公園)으로 조성(造成)하고자 83년부터 87년까지 5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추진(推進)하고 있다.

구체적(具體的)인 사업방침(事業方針)은 구역내 민가(民家)를 철거(撤去)하고 사유지(私有地)는 매입(買入)한 뒤 사적지(史蹟地)에 적합(適合)한 우리의 전통조경(傳統造景)을 하고 그 속을 거닐며 천년전(千年前)의 역사(歷史)를 회상(回想)할 수 있는 자연(自然)스런 산책로(散策路)를 조성(造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월성주위(月城周圍)에 외적(外敵)의 침입(侵入)을 막기위하여 성외곽(城外郭)에 과둔 해자(垓字)를 발굴조사(發掘調査)하여 독특(獨特)한 신라도성(新羅都城)의 모습을 재현(再現)하면서 성(城)뒤에 흐르는 남천(南川)의 일정교(日精橋)·월정교(月精橋)도 조사(調査)하여 정비(整備)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歷史的) 유적(遺蹟)의 보존(保存)을 우선으로 한 뒤, 간략한 휴게공간(休憩空間)을 조성(造成)하고 벤치 등의 제한된 편의시설(便宜施設)과 관리시설(管理施設)을 조성(造成)하여 공공(公共)의 이용(利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공주 공산성지구(公州 公山城地區)

고구려(高句麗)의 강압(強壓)에 南으로 내려온 백제(百濟)가 고토회복(故土回復)의 염원(念願)을 태웠던 공산성(公山城)도 기본적(基本的)으로는 월성(月城)과 같이 성내(城內)의 민가 건물(民家建物)을 철거(撤去)하고 사유지(私有地)를 매입(買入)한 뒤 성내(城內)를 돌면서 백제(百濟)를 생각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造成)하는 내용(內容)을 기반(基盤)으로 83년부터 87년까지 추진(推進)하고 있다.

기본적(基本的)인 사업방침(事業方針)은 성내(城內)에 아주 좋은 상태(狀態)로 남아 있는 지당(池塘)을 발굴(發掘)하여 보존정비(保存整備)하고 동문지(東門址)·망루지(望樓址)등의 건물지(建物址)를 정비(整備)하고 퇴락한 고건물(古建物)과 훼손된 성곽부분(城郭部分)은 보수(補修)하여 원상(原狀)을 보존(保存)하면서 공공(公共)의 이용(利用)을 위(爲)한 최소한(最小限)의 편의시설(便宜施設)과 관리시설(管理施設)을 조성(造成)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부여 부소산성지구(扶餘 扶蘇山城地區)

백제문화(百濟文化)는 일본(日本) 비조문화(飛鳥文化)의 선사국(先師國)으로 신라(新羅)의 불교문화(佛敎文化)에 못지않은 융성한 문화(文化)를 자랑하였으나 불행히 대부분 인멸된 상태이지만 부여(扶餘) 지역(地域)은 그 가운데에서도 비교적(比較的) 유적(유적(遺蹟))이 밀집(密集)된 곳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부소산성(扶蘇山城)은 그 중심(中心)에 놓여 있다고 보아 중요(重要)한 유적(유적(遺蹟))이라 하겠다. 백마강(白馬江)을 끼고 솟은 낙화암(洛花岩)의 전설(傳說)을 간직한 채 아직도 비교적(比較的) 잘 남아있는 부소산성(扶蘇山城)은 그

입구주변(入口周邊)의 오손(汚損)등으로 현재(現在)는 어수선한 상태(狀態)이다. 따라서 이곳도 월성(月城)·공산성(公山城)과 같이 성내변형(城內變形)된 부분(部分)을 바로잡고 입구부분(入口部分)의 가옥(家屋)을 철거하여 면모(面貌)를 일신(一新)한 뒤 성내사유지매입(城內私有地買入)과 민묘(民墓)등을 이장하고, 토성(土城)의 순환보도정비와 옛 건물지의 발굴 및 정비를 시행(施行)하려고 총 22萬 5千坪의 면적(面積)을 대상지역(對象地域)으로 83년부터 87년까지 5개년(個年)에 걸쳐 계획(計劃)을 수립(樹立)하였다.

특히 일본문화(日本文化)의 원류(源流)를 증명(證明)할 수 있는 인접(隣接) 구두래 지구(地區)의 보존정비(保存整備)도 연계(連繫)하여 추진(推進)해 나가고 있다.

2. 교육적 기능(教育的 機能)의 사적공원조성(史蹟公園造成)

가. 성곽유형(城郭類型)

조선인조(朝鮮仁祖)가 청(淸)의 침략(侵略)을 받아 45日間을 저항(抵抗)하다 치욕적(恥辱)인 굴욕(屈辱)을 겪어야 했던 한(恨)이 서린 남한산성(南漢山城)은 현실적(現實的)으로는 서울근교(近郊)의 시민위락처(市民慰樂處)로서의 기능(機能)이 큰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도시(大都市) 주변(周邊)의 넓은 경역(境域)을 가진 성곽(城郭)은 그대로 역사적(歷史的) 유적(遺蹟)이면서 공원(公園)으로서의 기능(機能)을 양립(兩立)해 나갈 수 있는 특성(特性)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조금 성격(性格)이 다르지만 현재(現在) 국립경기장(國立競技場)이 조성(造成)되는 부지(敷地) 한 가운데 놓여있는 몽촌토성(夢村土城)도 그 6만여평(萬餘坪)의 넓은 공간(空間)을 확보(確保)하면서 토성자체(土城自體)를 보존(保存)하는 것이 원형보존(原形保存)과 경역확보(境域確保)의 요소(要素)를 자연(自然)스럽게 구비(具備)한 사적공원(史蹟公園)의 전형(典型)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경기(國際競技)를 치룬다고 토성내(土城內)에 초현대적(超現代的) 시설(施設)을 한다면 외국인(外國人)들에게 감명(感銘)을 심어줄 수는 없다. 초현대적(超現代的) 시설(施設)만으로 우리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낡고 어리석은 생각이란 것은 앞서서도 누차 밝힌바 있다. 따라서 원형(原形) 그대로 토성(土城)을 보존(保存)하면서 그 주변(周邊)에 경기장(競技場)을 그야말로 최고(最高)의 수준(水準)으로 건립(建立)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전통(傳統)과 개발(開發)의 조화(調和)란 차원(次元)에서 세계(世界)에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곽유적(城郭遺蹟)은 그 넓은 경역(境域)으로 자연(自然)스런 공원요소(公園要素)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 자체(自體)를 그대로 보존(保存)하는 것이 사적공원(史蹟公園)의 조성(造成)이 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現在) 남한산성(南漢山城)은 가시권내(可視圈內)의 성벽(城壁)은 거의 보수(補修)를 완료(完了)해나간 단계(段階)이고, 몽촌토성(夢村土城)은 84年~85年 성내(城內) 발굴조사(發掘調査)를 실시(實施)하여 유구(遺構)가 발견(發見)되면 정비(整備)할 계획(計劃)으로 우선 성내민가(城內民家)를 철거(撤去)하고 사유지(私有地)를 매입(買入)하는 중에 있다.

나. 주거지·사지유형(住居址·寺址類型)

일반인(一般人)들이 이해(理解)하기 어려운 유적(遺蹟)의 유형(類型)이 바로 지하(地下)에 모든 유구(遺構)들이 잔존(殘存)해 있는 선사시대(先史時代) 주거지(住居址)와 사찰건

물지(寺刹建物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유적(遺蹟)은 지상(地上)의 유적(遺蹟)이 홍수(洪水)나 화재(火災)등의 재난(災難)으로 폐허(廢墟)가 되어있다가 그 위에 퇴적층이 쌓여 지표하(地表下)로 들어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발굴조사(發掘調査)를 실시(實施)하지 않고서는 확인(確認)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 발굴조사(發掘調査)를 실시(實施)하여 학술보고서(學術報告書)가 나와 유적(遺蹟)의 성격(性格) 및 그 가치(價値)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 유적(遺蹟)을 당장 일반인(一般人)들이 이해(理解)하기에는 쉽지 않아 그 정비(整備)에 약간의 어려움이 제기(提起)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적(遺蹟)들은 우선 전면적(全面的)인 발굴(發掘)을 실시(實施)하고 그 결과(結果)에 따라 정비(整備)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발굴(發掘)을 완료(完了)한 후 정비(整備)를 하려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정비(整備)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단순(單純)한 생각으로는 모두 다 옛날대로 복원(復元)하면 해결(解決)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경비(經費)도 경비(經費)려니와 지하(地下)에 잔존(殘存)된 부분적(部分的) 유적(遺蹟)·유물(遺物)만으로 지상건조물(地上建造物)을 완전(完全) 복원(復元)한다는 것은 사실상(事實上) 불가능(不可能)하고, 또 그대로 복원(復元)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일천(日淺)한 건조물(建造物)에 연륜(年輪)이 생명(生命)인 문화재(文化財)로서의 가치부여(價値賦與)를 할 수는 도저히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하유적(地下유적(遺蹟))의 발굴후(發掘後) 정비방향설정(整備方向設定)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一般的)으로 보통 발굴(發掘)로 노출(露出)된 유구(遺構)를 그대로 보존(保存)하는 방법(方法)이 있고, 다시 원상(原狀)대로 발굴(發掘)한 곳을 묻은 후 잔디등으로 잘 정리(整理)하는 방법(方法)도 있고, 지상유적(地上遺蹟)을 추정(推定)한 후 축소모형(縮小模型)을 제작하여 전시하는 방법(方法)도 있다.

대표적(代表的)으로 이 유형(類型)에 속하는 유적(遺蹟)은 선사주거지(先史住居址)인 암사동주거지(岩寺洞住居址)와 사지(寺址)로서 경주황룡사지(慶州皇龍寺址), 익산미륵사지(益山彌勒寺址), 부여정림사지(扶餘定林寺址)가 있다.

암사동선사주거지(岩寺洞先史住居址)는 한강연안(漢江沿岸)의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의 대표적(代表的) 유적지(유적(遺蹟)址)로서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서 지난 72년부터 75년까지 발굴조사(發掘調査)를 실시(實施)하여 즐문토기시대(櫛文土器時代)의 대표적(代表的) 토기류(土器類)와 주거지(住居址)를 확인(確認)하고 도로 덮어두었던 곳인데 79년 중서부고도문화권보존정비계획(中西部古都文化圈保存整備計劃)이 수립(樹立)되면서 대상사업(對象事業)에 포함(包含)하여 80년부터 그 정비작업(整備作業)을 착수(着手)하였다. 정비방향(整備方向)은 이 지역(地域)이 우리나라 선사시대(先史時代)의 대표적(代表的) 유적지(遺蹟地)인 만큼 선사시대(先史時代)의 모습을 국민(國民)들에게 잘 전달(傳達)시키고, 우리 선조(先祖)의 선사시대(先史時代) 생활양식(生活樣式)을 이해(理解)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意見)을 모으고, 前에 확인(確認)한 주거지(住居址)를 노출전시(露出展示)하고 그를 위(爲)해 간략(簡略)한 구조(構造)이지만 거대(巨大)한 전시관(展示館)을 세우고, 일부 주거지(住居址)에는 옛 그대로의 움집을 재현(再現)하고 내부(內部)에 석기(石器)등의 기구류(器具類)도 직접 전시(展示)할 계획(計劃)이다.

사지(寺址)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정비(整備)할 것이나, 현재발굴중(現在發掘中)인 사지(寺址)의 경우(境遇), 그 엄청난 사역(寺域)으로 말미암아 발굴(發掘)이 쉬이 종료(終了)되지 못하여 아직 본격적(本格的)인 정비(整備)를 할 수 없고, 우선 노출(露出)된 유구(遺構)를 보존(保存)정비(整備)하는데 그치고 있다.

황룡사지(皇龍寺址)의 경우 지난 76년부터 84년 현재(現在)까지 9년에 걸쳐 37,000여평(餘

坪)을 발굴(發掘)하여 왔고, 유물(遺物)도 41,156점(點)이나 출토(出土)되었지만 아직도 그 정확(正確)한 사역(寺域)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現在) 1차 발굴결과(發掘結果)를 정리(整理)하여 초기(初期) 신라가람배치(新羅伽藍配置)의 특이(特異)한 양식(樣式)을 밝힌 보고서(報告書)를 발간(發刊)하였으나, 아직 발굴종료시점(發掘終了時點)을 定하지 못하고 계속(繼續) 발굴(發掘)을 시행(施行)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발굴(發掘)이 완료(完了)된 건물지(建物址)는 잔디보식(補植)으로 부분(部分) 정비(整備)는 하여왔다.

미륵사지(彌勒寺址)도 황룡사지(皇龍寺址)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게 지난 80년부터 현재(現在) 5년동안 17,700坪을 발굴(發掘)하고 1,522點의 유물(遺物)을 수습(收拾)하였으나 아직 완전(完全)한 사역(寺域)을 확정(確定)하지 못하고 계속(繼續) 발굴(發掘)을 추진(推進)하고 있다. 부여(扶餘)의 정림사지(定林寺址)는 현재(現在) 사지(寺址)에 두점(點)의 석조(石造)문화재(文化財)가 놓여 있으며 주위(周圍)가 이미 시가지화(市街地化)되어 그 경역(境域)은 비교적 제한(制限)된 공간(空間)에 놓여 있으나 출토(出土)된 와당(瓦當), 와편(瓦片)등으로 보아 대단한 사찰(寺刹)이었음은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미륵사지(彌勒寺址), 정림사지(定林寺址) 모두 역시 황룡사지(皇龍寺址)와 같이 발굴(發掘)이 진행중(進行中)이므로 그 정비(整備)는 그 결과가 명확(明確)히 나온 다음에 방향(方向)을 세워 추진(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添言)한다면 우리나라 유형문화재중(有形文化財中) 상당(相當)한 수(數)가 불교문화재(佛敎文化財)로 전국(全國) 어느 곳엘 가나 석탑(石塔), 불상(佛像)등을 찾아볼 수 있으며, 불교(佛敎)의 유적(遺蹟)이 놓여있음을 알 수 있어 그 옛날 우리 조상(祖上)들이 불교(佛敎)에 귀의(歸依)하였던 정신세계(精神世界)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고 석조물(石造物)이 남아있을 뿐이나 몇천, 몇만평의 벌판에 수십, 수백동의 건물이 즐비하게 놓였을 당시의 사찰(寺刹) 모습을 상상해본다면, 이러한 사지(寺址) 유적(遺蹟)이 얼마나 중요(重要)한 것인가는 재언(再言)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 고분유형(古墳類型)

우리가 역사이전시대(歷史以前時代)를 밝히기 위한 증거품(證據品)인 유적(遺蹟)의 대부분(大部分)은 옛 무덤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제시대(日帝時代) 이래(以來) 가장 사람의 손을 많이 타고, 실제 많이 파괴된 유적(遺蹟)이 바로 고분(古墳)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古墳內의 유물(遺物)은 도굴(盜掘)되었지만 그 구조등(構造等)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분(古墳)중에는 경주(慶州)에 밀집(密集)된 적석목곽총(積石木槨塚)과 같이 도굴(盜掘)이 불가능(不可能)한 것이 있어 아직도 많은 유물(遺物)이 매장(埋藏)되어 있는 것도 부지기수인 것이다.

이러한 고분류(古墳類)는 피장자(被葬者)의 부장품(副葬品)이 주요(主要) 유적(遺蹟)로 변하여 도굴(盜掘)꾼의 목표(目標)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발굴(發掘)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政府)에서 발굴(發掘)하는 고분(古墳)도 일단은 도굴(盜掘)꾼에 의해 훼손된 경우이고, 각 대학교(大學校)의 발굴(發掘)도 이미 도굴(盜掘)된 고분(古墳)의 구조확인(構造確認)에 한하여 허용(許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現在) 정비(整備)하고 있는 고분(古墳)은 서울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石村洞百濟初期積石塚)과 공주(公州)의 송산리고분군(宋山里古墳群), 부여(扶餘)의 능산리고분군(陵山里古墳群), 경산(慶山)의 임당동고분군(林堂洞古墳群)과 이미 완료(完了)한 서울 방이동고분군(芳蕙洞古墳群), 황남(皇南)·황오고분군(皇吾古墳群)등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것은 무지(無知)로 인하여 상당히 훼손(毀損)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도굴(盜掘)당한 것이 있고, 또 온전히 보존(保存)되어 내려온 것도 있으며, 우연한 공사(工事)로 발견(發見)되어 세상에 그 가치가 알려진 경우도 있다.

석촌동고분(石村洞古墳)의 경우 74년부터 76년까지 잠실 지구(地區)의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에 앞서 학술조사(學術調查)를 시행(施行)하면서 그 존재(存在)가 알려져 83년부터 그 정비(整備)를 추진(推進)해나가려 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言及)한대로 개발론자(開發論者)들의 눈에는 지장물(支障物)로 보여지고 있어 그 정비(整備)가 어려운 형편이다. 발굴당시(發掘當時) 사유건물(私有建物)이 고분(古墳)에 무수(無數)히 들어와 완전발굴(完全發掘)을 못하였다가 83년 간신히 확대조사(擴大調查)한 결과, 한반도(韓半島) 최대(最大)의 적석총(積石塚)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제는 토지구획(土地區劃)이 완료(完了)되었다는 현실(現實)로 경역확보(境域確保)에 약간의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는 처지에 있다.

그러나 일단 문화재(文化財)의 품격유지(品格維持)를 위하여 시간(時間)이 걸리더라도 석촌동고분(石村洞古墳)은 그 면모를 찾도록 정비(整備)하여 86, 88올림픽에 가장 빛나는 우리의 유적(遺蹟)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할 계획(計劃)이다.

공주(公州), 부여(扶餘), 경주지역(慶州地域)의 고분(古墳)들은 비교적(比較的) 훌륭하게 보존(保存)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特別)한 정비(整備)보다는 고분경역(古墳境域)을 크게 넓히고, 최소한(最小限)의 전시시설(展示施設)등을 갖추어, 고분(古墳)의 구조(構造), 부장(副葬)유적(遺蹟)등을 설명(說明)하고 고분군(古墳群)은 출토당시(出土當時)의 상황(狀況)을 그대로 보존(保存)하여 놓은 전시관(展示館)을 건립(建立)하였고, 능산리고분군(陵山里古墳群)에는 백제시대(百濟時代)의 고분축조양식(古墳築造樣式)을 일람할 수 있는 고분전시관건립(古墳展示館建立)을 추진(推進)하고 있다.

참고문헌(參考文獻)

우리나라의 文化財, 文化財管理局 1974.
都市計劃, 尹定燮(서울工大教授)